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특허청 2024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안) 타당성 분석

2024. 4

한국정책학회

연구진

김태진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한국정책연구소 소장)

목 차

I. '24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주요 방향	5
1. 2024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의 의의 및 체계	5
2.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의 주요 변경 내용	7
 II. '24년도 특허청 성과관리 시행계획 목표체계 분석	10
1. 성과관리계획 수립시 정평위 및 자평위 지적의 보완여부 분석	10
1)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제도의 개요	10
2) 주요 변경사유 및 보완내용 요약	11
3) '24년도 특허청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주요 보완사항 및 내용	13
2. '24년도 특허청 성과관리 목표체계 주요 변경사항 및 적절성 분석	14
 III. '24년도 특허청 성과관리 시행계획 성과지표 분석	15
1. '24년도 특허청 성과관리시행계획 전략목표의 성과지표 변경사항 분석	15
2. '24년도 특허청 성과관리시행계획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변경사항 분석	15
3. '24년도 특허청 성과관리시행계획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변경사항 분석	18
 IV. '24년도 특허청 성과관리 자체평가계획 주요 변경 사항 분석	21
1. 성과관리 자체평가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지표 변경 사항 분석	21
2. '24년도 특허청 자체평가 기본방향의 주요 특징	22
3. 특허청의 '24년 자체평가 계획 세부 평가지표 변동 내용	25
4. '24년도 자체평가계획의 '23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및 특징	26
5. '24년 특허청의 협업 시스템 구축 및 협업과제 도출	28

V. '24년도 특허청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환류 등 관련계획 분석	32
1. 이행상황 점검계획의 적절성 분석	32
2. 평가결과 환류체계의 적절성 분석	35
 VI. '24년 특허청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의 성과제고를 위한 방향	40
1. 국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핵심 민생과제] 선정 및 집중 추진 필요	40
2. 민생정책의 성과제고를 위한 현장의견 수렴 계획의 구체화 필요	40
3. 적절한 '협업과제'의 발굴과 협업에 대한 성과관리 필요	41
4. 성과관리의 자율성 강화와 미흡 및 부진 과제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42
5. 상시점검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한 자체평가의 적절성 확보	42
 참고문헌	44

I. '24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주요 방향

1. 2024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의 의의 및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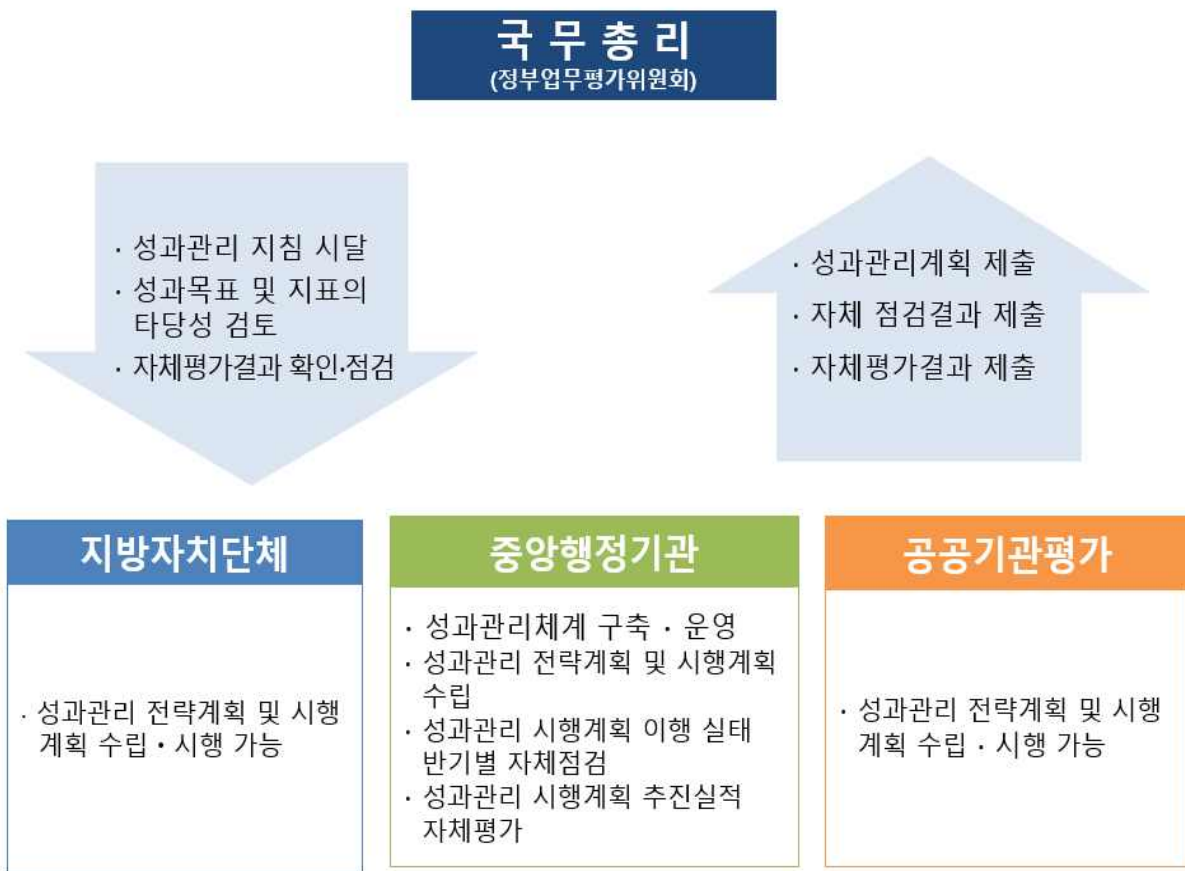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정부업무 성과관리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책에 대한 책임성 확보와 정책품질 및 국민만족도 제고에 있음
 - 즉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
 -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 정부업무의 성과·정책품질 및 국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
- 정부업무평가에 있어서 '성과관리'란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음(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조 제6호)
- 정부업무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수립배경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근거하여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 각종 정책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음(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8조)*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의결 ('21.2.19)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8조③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전년도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평가대상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3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정부업무 성과관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은 ‘성과관리 전략계획(5년단위)¹⁾’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 자체평가 계획(1년단위)²⁾’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소관 정책을 스스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조직·예산·인사·보수 등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4년 정부업무 성과관리 추진체계는 <그림 I -1> 과 같음

<그림 I -1> 정부업무 성과관리 추진체계



* 자료: 국무조정실, 성과관리 추진체계(<https://www.evaluation.go.kr>)에서 재구성

1) 성과관리 전략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기관을 포함한 당해 기관의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5년 단위의 중·장기계획

2) 성과관리 시행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의미함

2.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의 주요 변경 내용

1) [핵심 민생과제] 선정 및 집중추진, 국민체감도 향상

- 기관별로 핵심 민생과제를 선정하고 집중추진하며, 국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성과관리시행계획 심의 및 의결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사항, 국정과제 연관성 및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과제를 선정할 것이 요구됨
- * 부처별로 탄력적으로 설정('23년 핵심관리과제의 경우 부처별 관리과제 개수의 5% 수준)

- 이해관계자 · 현장방문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을 구체화할 것이 요구됨
-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시 분기별 이해관계자 간담회, 현장방문 등 민생현장의 의견수렴 계획을 반영할 것이 요구됨
- 운영실태 점검시 '현장이견 계획 이행' 여부 확인 및 평가에 반영해야함

2) 협업과제의 발굴 등 협업 성과관리의 도입

- 성과관리시행계획에서 '협업과제' 부문을 신설하고 부서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협업 성과관리를 추진해야 함
- * 원칙적으로 부서간 협업이 과제 대상
-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과제를 선정하되, 협업을 통하여 자원 절감, 갈등해소, 행정 서비스 개선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고 측정가능한 과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 소속기관 등 수직적 협력, 인사·예산 등 지원부서와 협력, 일회성 관계적 협력 등 제외

<협업과제 판단 (예시)>

- 2개 부서 이상 협력 수행시 비용이 절감되거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과제
- 부서간 이해 상충 조정을 통해 사업추진이 필요한 과제
-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관계부서 협조가 필수적인 과제
- 위원회 등 부서간 협의기구를 통해 심의·결정된 과제 등

□ 협업 성과관리 도입 첫해임을 고려하여 기관별 과제수 최소화

* 장관급 기관 5개, 차관급 기관 2개 이상

- 기존 관리과제 중 협업 요소가 있는 과제를 협업과제로 지정
- 기관별 여건에 따라 신규 협업 과제 추가도 가능

□ 협업 우수사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기관 내 담당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권장
- '24년 성과관리 운영실태 점검 시, '협업평가 우수사례'에 대한 가점 부여
- * '성과관리 자체평가 우수사례(5점) -> 성과관리 협업평가 우수사례'(8점)

<협업과제 평가지표 예시>

구분	내용
협업난이도(30)	- 관계부서 갈등 여부 및 갈등 지속기간 - 상시적·관계적 협조에서 벗어나, 협업을 통해 실질적 정책개선 이 있는 과제인지 여부
협업 성과(70)	- 관련 제도 개선 대책 발표, 법령개정 등 실질적 정책개선 효과 - 언론보도, 국민만족도 등 국민체감 효과

* 향후 '정부업무평가-주요정책부문' 협업부문 평가방침 마련시 검토 조정

- 협업과제 우수사례 중심의 성과관리 및 자체점검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 지급 예정, 관계기관 합동 평가결과 및 우수사례 보고 대회 개최 검토

3) 기관의 성과관리 자율성 강화

- 연중 자체평가 총괄기관과 각 부처 워크숍, 간담회 등을 통해 서식 간소화, 지표 개발, 사례 공유 등 주기적 의견수렴
- 계획 작성시 실효성이 낮거나, 중복 여지가 있는 일부 항목 삭제 등 성과관리 시행계획 양식의 간소화
 - * “V. 환류 등 관련 계획” 목차 내 “3. 변화관리계획” 삭제(붙임서식 참고)
- 전년도 목표달성을 실패한 과제의 경우, 전년도 실적을 목표로 설정한 경우에도 ‘도전적 목표설정’으로 인정

4) 전자통합평가 시스템 활성화

- 성과지표 Pool 구성 및 공유 등을 위해 부처별 성과지표 등 전자통합평가시스템 내 DB 입력·관리 충실화 조치 필요
- 전자통합평가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시스템으로 성과지표 Pool 제고 및 활용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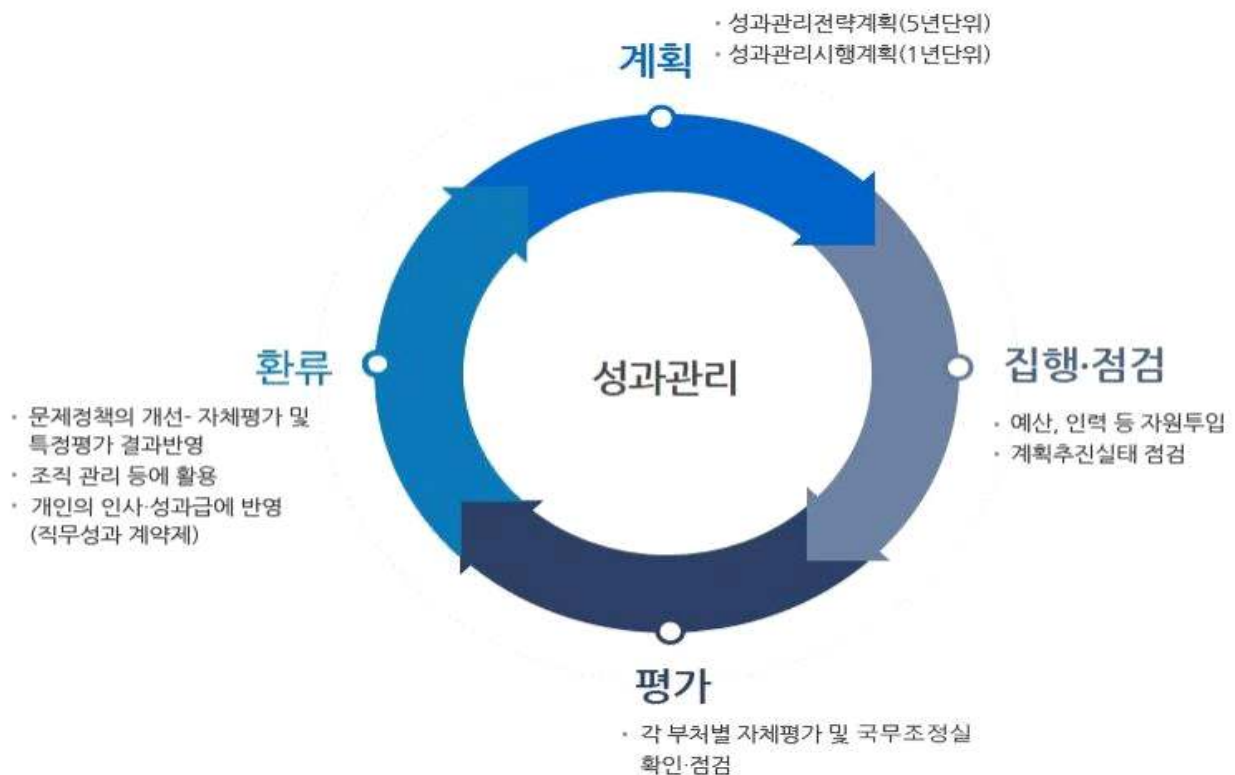
Ⅱ. '24년도 특허청 성과관리 시행계획 목표체계 분석

1. 성과관리계획 수립시 정평위 및 자평위 지적사항 보완여부 분석

1)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제도의 개요

-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성과관리는 부처의 임무, 중·장기 및 연도별 목표,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데 목표가 있음(정평법 제2조).
- 성과관리의 자체평가는 기관장 책임하에 소관 정책을 스스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정책·예산·인사 등에 반영하여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있음(정평법 제14조)

<그림 Ⅱ-1> 성과관리·자체평가 체계



2) 주요 변경 사유 및 보완 내용 요약

- 2024년도 특허청 성과관리 시행계획(안)은 '23년 정부업무평가결과(정부업무평가위원회·국무조정실, 2024)', '23년도 주요정책 부문 평가: 과제별 보고서(2024)', 그리고 '24년 특허청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자체평가위원회의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적절히 보완한 것으로 판단됨 <표 II-1 참고>.
- 특허청의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간의 논리적 연계성 검토 및 지표 명칭의 적절성 검토하여 변경된 것으로 판단됨
 - '24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국무조정실)'의 지침, 특허청 자체평가위원회의 의견 수용, 특허청 내부의 T/F 논의결과를 반영하여 성과목표 성과지표(IV-1, IV-2)와 관리과제 성과지표(II-1-②, III-1-①, III-2-①)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성과지표의 경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 중심의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를 구성하고, 과제를 포괄하는 지표, 지표 등의 명료화라는 기준을 가지고 지표의 수정 및 변경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됨.
 - 자체평가계획에서는 평가담당조직 구성 및 운영의 적절성, 자체평가 방법 및 일정,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의 적절성 등이 체계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판단됨.
 - 2024년도 특허청 성과관리 시행계획(안)은 정부업무평가결과의 지적사항, 2024년 특허청 업무계획, 특허청 자체평가위원회의 의견 수렴, 특허청 내부의 T/F 논의 결과 등을 통해 전략목표, 전략목표의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

목표의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등을 변경, 신설, 통합, 삭제 하였으며 각각의 변경내용을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다음의 <표 II-1>과 같음

<표 II-1> 정평위 및 자평위의 지적사항 및 의견수렴 반영 사유 및 내용 요약

항목	주요 변경 사유	변경 내용
전략목표	□ 2023년 대비 변동없음	□ 변동없음
전략목표 성과지표	□ 2023년 대비 변동 없음	□ 변동없음
성과목표	□ 2023년 대비 변동없음	□ 변동없음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 과제를 포괄하는 지표 설정, 지표 명료화 등에 따라 성과지표 2개변경	□ IV-1, IV-2의 성과지표를 변경
관리과제	□ 2023년 대비 변동없음	□ 변동없음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 자평위의 검토의견 반영, 성과지표 명료화, 과제를 포괄하는 지표 설정, 관련 업무 강화 등에 따라 지표 추가 및 변경	□ 성과지표 변경 6개

3) '24년도 특허청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주요 보완 사항 및 내용

-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수 및 지표변경
 - 2024년도 특허청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성과지표의 주요 변경사유는 국조실의 의견반영, 특허청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견 반영, 재정사업평가와의 연계성 강화, 재정사업의 통합 및 연계성 확보, 보조사업 연장평가 심사 의견 반영 등에 토대를 두고 있음

<표 II-2> '24년도 전략·성과목표·관리과제 및 성과지표 수

연도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과제	지표	과제	지표	과제	지표
2024	4	4	8	11	17	30
2023	4	4	8	11	17	31
2022(수정*)	4	4	8	11	17	30
2022	4	4	8	11	17	28

<표 II-2-1> '24년도 특허청 성과지표의 성격

구분		성과지표					
		소계	지표성격				정량지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전략목표	4	4			2 (50%)	2 (50%)	4 (100%)
성과목표	8	11			0 (0%)	11 (100%)	11 (100%)
관리과제	17	30		1 (3.3%)	11 (36.7%)	18 (60%)	30 (100%)

- 특히, 자체평가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성과지표의 명료화, 과제의 목적과 방향에 맞는 포괄적인 지표설정, 관련 업무의 강화 등이라는 구체적인 목적을 갖고 지표를 변경한 것으로 판단됨
- 전략목표, 성과목표의 수는 '23년 대비 과제수 및 지표수는 동일한 것으로 확인됨
- 관리과제의 수 및 내용은 동일하나, 관리과제 성과지표는 변경(5)와 삭제(1)를 실시하였음. 이는 특허청 자체평가위원회의 의견 반영, 관련 업무의 강화, 그리고 지표의 대표성과 포괄성의 강화라는 기준에 부합되도록 수정한 것으로 확인 됨.

<표 Ⅱ-3> 2024년 전략·성과목표·관리과제 성과지표 변경 현황

목표체계 수정			성과지표 수정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삭제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5	1

2. '24년도 특허청 성과관리 목표체계 주요 변경사항의 적절성 분석

- 특허청의 '24년도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는 '23년 대비 변동사항이 없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Ⅲ. '24년도 특허청 성과관리 시행계획 성과지표 분석

1. '24년도 특허청 성과관리시행계획 전략목표 성과지표의 변경사항 분석

- 2024년도 특허청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전략목표 성과지표는 특허청의 임무와 비전을 감안하여 설정된 것으로 국정지표, 국정전략, 기관의 임무와 논리적 연계성 확보를 위해 '23년 대비 변경 없이 일관성을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됨
- 2024년도 특허청의 전략목표 성과지표는 '21년 개편이후 성과관리 전략계획의 계획기간(5년간) 동안 성과의 개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특허청의 전략목표는 국가 장기계획, 특허청의 소관 분야별 중·장기 계획, 국가재정법 제7조에 의한 국가재정 운용계획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2. '24년도 특허청 성과관리시행계획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변경사항 분석

- 2024년도 특허청 성과목표의 성과지표는 전략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 계획기간 내에 달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정하였으며,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공정한 지식재산 보호체계구축,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을 촉진하고 보호를 강화하며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등 범정부 핵심 과제를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2024년 특허청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변경사유는 기존 성과지표의 포화상태 도달(도전적 목표설정의 어려움), 사업의 핵심지표의 반영, 성과지표의 범위 확대(다양한 고객의 만족도 조사), 등 성과지표의 명료화, 성과목표의 대표성 강화를 위한 포괄적 지표로 변경하기 위한 노력이 반영되었으며, 특허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검토의견 및 특허청 평가지원 TF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됨

<표 Ⅲ-2> 2024년 특허청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변경내용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2023년도	2024년도	변경사유
	IV-1. 창의적인 지식재산 인력을 양성한다.		
	(지표) 대학(원) 지식재산권 교육이수자 교육만족도(점)	(지표) 지역 내 지식재산 융합교육 확산건수(건) (변경)	IP중점대학은 IP융합교육의 지역거점으로, 지역 내 대학기관기업고교 등으로의 IP교육 확산은 사업의 핵심지표임(기존 지표는 포화 상태에 도달하여 도전적 목표설정이 곤란하며, 만족도 90%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였음)
	IV-2. 디지털 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하여 특허행정서비스를 혁신한다.		
	(지표) 지식재산행정 정보화 서비스 만족도 ② 특허로 외부고객 만족도	(지표) 산업재산 정보화 서비스 만족도(점) ② 특허행정정보시스 템 외부고객 만족도(변경)	- 기존 지표는 특허로 홈페이지 내 일부 메뉴에 대해 측정한 만족도로 제한적인 범위의 외부고객 만족도임 - 신규 성과지표는 기존 지표보다 넓은

			범위(전자출원 서비스, 전자출원 교육, 특허청 홈페이지)의 만족도 조사로,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에 서 제공하는 특허행정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인 만족도를 나타내는 지표임
--	--	--	--

3. '24년도 특허청 성과관리시행계획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변경사항 분석

- 2024년 특허청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변경사항은 자체 평가위원회의 검토의견 등이 반영되어 지표삭제 및 통합,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됨
- 관리과제의 성과지표는 특허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수용하여 변경한 것으로 특허청 자체평가위원회의 주체적이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고 판단됨

<표 Ⅲ-3> 2024년 특허청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변경내용

관 리 과 제 의 성 과 지 표	2023년도	2024년도	변경사유
	Ⅱ-1-② 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 역량 강화		
	(지표) 해외 지재권 분쟁 대응 기여도	(지표) 지원기업 수출활동 개선율(%) (변경)	■ 자체평가위원회 검토의견 반영 (관리과제의 목적은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 확대이므로, 관리과제의 성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변경)
	Ⅲ-1-① IP 금융 연계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사업화 및 거래 촉진		
성 과 지 표	(지표) ① 지식재산 보증·대출·투자 지원액(억원)	(지표) ① 지식재산 투자잔액(억원) (변경)	■ 성과지표 명료화 (기존에는 당해연도 신규 공급액을 성과지표로 활용하였으나, 금융 특성상 자금의 활용이 단년도로 끝나는 경우는 많지 않고 기업은 해당 자금을 지속 활용 함 이에, 「지식재산 투자잔액」으로 성과지표를

관 리 과 제 의 성 과 지 표			변경하여, 기업이 지식재산을 통해 조달·활용하고 있는 자금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지속 확대토록 함에 따라, IP 금융이 기업의 자금 조달 문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지표) ③ 지식재산공제 가입건수(건)	(지표) ③ 지식재산공제 부금수납액(억원) (변경)	■ 자체평가위원회 검토의견 반영 (최근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기업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중도·만기해지건수가 지속 증가하여 순증 가입건수의 예측이 어려움) ■ 이에 따라, 상호부조를 통한 중소기업 지식재산 안전망 구축이라는 사업 목표를 고려할 때, - 「누적부금수납액」이 공제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정량적 지표로서 더 적절하므로 성과지표를 변경하였음)
	Ⅲ-2-①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성장 촉진		
	(지표) 지식재산 경영인증 지원사업 기여도(%)	(지표) IP 지원사업 만족도(점) (변경)	■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담당했던 ‘IP 협력 기반 강화’ 사업 폐지에 따른 새로운 성과지표 설정

관 리 과 제 의 성 과 지 표	Ⅲ-2-②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		
	(지표) ① 아이디어 기반 창업건수(건)	(지표) ① IP 컨설팅 효과도(점)	■ 자체평가위원회 검토의견 반영 (IP컨설팅 효과도는 수혜기업이 체감한 사업의 효과 및 성과에 대한 정성·정량적 요소를 모두 반영하는 지표로 변경 전 지표(아이디어 기반 창업건수)보다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IP기반 창업촉진 지원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적합)
	(지표) ② 스타트업 IP경쟁력 강화 기여도(점)	(지표) (삭제)	■ 기존 성과 지표의 대상 사업(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이 폐지됨에 따라 성과지표 삭제

IV. '24년도 특허청 성과관리 자체평가계획 주요 변경 사항 분석

1. 성과관리 자체평가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지표 변경 사항 분석

- '24년 특허청 자체평가의 기본방향은 '24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안)](국조실)'의 반영,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과제 등 국정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체평가 성과지표와 주요정책과제 성과지표의 연계강화, 특허청 자체평가위원회 의 평가결과의 환류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됨
- '24년 특허청 자체평가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수립일정 및 경과는 다음의 표와 같음

<표 IV-1> 특허청 자체평가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 과정

일 정	수 립 경 과	비 고
'24. 2.	자체평가 워크숍	담당부서
'24. 3.	특허청 자체평가계획(안)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안) 수립	담당부서
'24. 3.	자체평가위원 및 전문가 의견수렴	혁신행정담당관
'24. 3.	자체평가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 최종 확정	자체평가위원회

2. '24년 특허청의 자체평가 기본방향의 주요 특징

□ '24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국조실)의 지침 반영

- 특허청은 '24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국조실)의 지침을 적극 반영하여 '23년 자체평가 미흡 및 부진과제에 대한 개선계획 마련 및 반기별 점검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 기관별로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파급효과가 큰 핵심 민생과제를 선정하고 집중 추진하며, 자체평가 결과에 반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 * 전체 관리과제의 5% 수준. 추진성과에 따른 가감점 및 담당부서·담당자 인센티브 부여
- 협업과제를 신설하여 부서간 협업을 촉진하고, 협업을 통한 자원절감, 갈등해소 및 행정서비스 개선 등 성과창출 지원*할 계획임
 - * 협업과제 평가 가감점 반영 및 하반기 갈등관리·협업우수사례 경진대회 추진
- 특허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재구성 시 장기간 연임 중인 위원 위촉을 제한하고, 타부처 자체평가위원 중복 선임여부 확인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 특히, '24년 이내 가시적인 성과창출이 필요한 핵심관제 선정, 집중추진, 자체평가 결과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 강화,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수용도 제고를 위한 건의사항 수렴 등을 잘 인지하고 성과관리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됨

□ **국정·주요정책과제 등 국정운영 지원**

- 자체평가를 통해 국정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체평가 성과지표와 주요정책과제 성과지표의 연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 자체평가의 월별·분기별 집행계획을 주요정책과제의 세부이행계획과 일치시켜 효율적인 성과관리 도모할 계획임

□ **자체평가결과의 환류**

- 우수부서 기관장 상장, 포상금 지급(1,000만원), 우수과제 담당자에 대한 개인 성과평가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계획을 세우고 있음
- 특허청은 '23년 자체평가 미흡 및 부진과제 관리 강화를 위해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반기별 점검을 추진할 계획임
- 특히, 부처의 관심제고 및 지속적인 개선이행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개선계획 마련, 자체평가위원회 보고 체계를 구축 등 환류체계를 강화할 계획임

□ **평가결과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수용도 제고를 위한 건의사항 수렴**

-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조직 구성원 수용도 제고를 위하여, 계획수립 시 자체평가제도 운영과 관련한 개선 건의사항 등을 수렴한 것으로 판단됨

□ **국정 및 주요 정책과제 등 국정운영을 지원 및 성과지표 연계 강화**

- 특허청은 자체평가를 통해 국정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체평가 성과지표와 주요정책과제 성과지표의 연계 강화하고, 자체평가의 월별·분기별 집행계획을 주요정책과제의 세부이행계획과 일치시켜 효율적인 성과관리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중복선임 제한을 위한 노력 강화**

- 대면회의를 통한 안건 심의로 자체평가위원의 의견수렴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성과 설명회, 현장 점검을 통한 심층 평가 등 자체평가위원의 과제 이해도 증진을 통한 자체평가결과의 신뢰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자체평가위원회 인적 구성을 내실화 하기 위해 부처간 중복선임 및 장기간 연임을 제한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특허청의 '24년 자체평가계획 세부 평가지표 변동 내용

- '24년 특허청의 주요정책 부문 성과관리 평가 항목은 '23년도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일한 것으로 분석되나, 세부 평가지표는 국조실의 '24년 성과관리 운영지침(안)에 따라 가감점의 내용을 강화하기 위한 의지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표 IV-2 참고>.

<표 IV-2> '22년대비 '23년 자체평가계획 세부 평가지표의 주요 변동 내용

주요정책 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23년		'24년	
• 성과 지표의 적절성 (10점)	• 성과지표의 대표성 (5점) • 목표값의 도전성 (5점)	• 성과 지표의 적절성 (10점)	• 성과지표의 대표성 (5점) • 목표값의 도전성 (5점)
• 계획수립의 충실성 (10점)	• 이해관계자 · 전문가 등 의견수렴 및 반영 충실성 (10점)	• 계획수립의 충실성 (10점)	• 이해관계자 · 전문가 등 의견수렴 및 반영 충실성 (10점)
• 정책집행 노력 (15점)	• 추진계획 대비 집행이행도 (5점) • 과제이행 노력도(협업, 갈등관리, 장애극복 등) (10점)	• 정책집행 노력 (15점)	• 추진계획 대비 집행이행도 (5점) • 과제이행 노력도(협업, 갈등관리, 장애극복 등) (10점)
• 정책성과 (65점)	• 성과지표 달성도 (10점) • 성과지표 이외 계량된 체감성과 (10점) • 정책 효과 (40점) • 이전 평가, 국회 등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정도 (5점)	• 정책성과 (65점)	• 성과지표 달성도 (10점) • 성과지표 이외 계량된 체감성과 (10점) • 정책 효과 (40점) • 이전 평가, 국회 등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정도 (5점)
• 가점 (5점)	• 국정과제·주요정책과제 기여도 • 관계부처와의 협업·갈등관리·사회적 가치노력	• 가점 (5점)	• 국정과제·정부업무평가(특정평가) 기여도 • 갈등관리·사회적 가치노력
• 가감점 (1점)	핵심 관리과제 실적(1점)	• 가감점 (1점)	• 핵심 민생과제 및 협업과제 실적

4. '24년 자체평가계획의 '23년 대비 주요 변경 사항 및 특징

□ '24년 정부업무성과관리운영지침(국조실)의 기본방향을 반영함

- 자체평가 부진과제에 대한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반기별 점검 추진
 - '23년 자체평가 미흡·부진과제에 대한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반기별 점검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한 핵심 민생과제 선정 및 집중 추진
 -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민생과 직결된 핵심 민생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하고, 자체평가 결과에 반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 부서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협업과제)로 사전 선정한 관리과제 대상으로 가시적인 성과창출 정도 측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조직 구성원 수용도 제고를 위하여, 계획수립 과정에서 자체평가제도 운영과 관련한 개선 건의사항 등 수렴 권고
- 특허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재구성 시 장기간 연임 중인 위원 위촉을 제한하고, 타부처 자체평가위원 중복 선임여부 확인

□ 국정·주요정책과제 등 국정운영 지원

- 자체평가를 통해 국정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체평가 성과지표와 주요정책 성과지표와 연계 강화

- 자체평가의 월별·분기별 집행계획을 특허청 주요정책의 세부이행계획과 일치시켜 효율적인 성과관리 도모

□ 자체평가결과를 조직·인력운영계획 수립에 활용

- 조직관리(통·폐합) 및 소요정원 등 인력운영계획에 반영
 -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의 중점 과제를 담당하는 상위 평가부서에 대해서는 소요정원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
 - 자체평가 결과 중·하위로 평가된 부서에 대해서는 인력운영 측면에서 성과저하의 원인을 파악하고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성과제고 지원
- 주요정책 자체평가 결과의 환류 강화로 정책품질 제고
 -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지적된 개선·보완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반기별 이행상황을 점검
 - 개선·보완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및 개선성과를 자체평가 시 반영
 - * 자체평가 평가지표에 '개선·보완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반영
- 통합재정사업평가에서 제시된 미흡사업의 개선 조치 내용을 반기별 점검

□ 평가결과 공개 확대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인성과급 반영 강화

- 특허청의 경우 자체평가결과의 개인 성과급 반영비율을 전년과 동일하게 40%로 유지하여 평가결과의 실효성 확보에 노력하는 것으로 판단됨

5. '24년 특허청의 협업 시스템 구축 및 협업과제 도출

- '24년 특허청은 국조실의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안, 2024. 2)을 적극 반영하여 협업체계구축에 대한 시스템 정비와 온라인 해외직구 위조상품 대응 등의 구체적인 협업과제를 신설한 것으로 분석됨

1) 특허청의 비전과 임무를 반영한 협업체계 구축

: 특허 심사·심판 정합성 제고를 위한 협업체계

□ 과제 목표

- 특허심사와 심판·소송의 판단 기준 및 견해 차이를 최소화
 - 심사관과 심판관 간 특허성 판단의 정합성 제고 방안 논의
 - 주요 심결 사례 공유 및 심사정책 반영을 통한 심사·심판 품질 제고

□ 주요 내용

- 심사과, 심판부, 특허심사총괄과, 심판정책과가 공동으로 기술분야별* 주요 심결 사례 검토 및 선정

* 전기/화학/기계/복합 등 4개 기술분야로 나누어 추진

- 심사과, 심판부, 정책부서가 참석하는 기술분야별 합동회의 개최
 - 기술분야별 쟁점사례, 심판원·법원의 판단 기조 변화, 특허 판단 시 주요 검토 사항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질의·응답

- 합동회의 결과를 반영한 심사·심판 판단기준, 정책, 제도 개선 마련

□ 부서간 협업필요 사항

- (특허심사총괄과) 특허심사 관련 업무 추진
 - 심사과 의견 사전 취합 및 검토, 회의 결과 확산 및 심사정책 개선 추진
 - 취소환송률·무효심판인용률 감소 방안 마련 및 심사기준 정비
- (심판정책과) 심판·소송 관련 업무 추진
 - 취소환송, 특허무효 현황 분석 및 주요사례 검토, 심판원·법원의 판단 기초 변화 공유
 - 취소환송률·무효심판인용률 감소 방안 마련 및 심판기준 정비

□ 추진계획

- '24년 특허 심사-심판 합동회의 개최('24년 총 4회 실시)
- 사례 검토 및 세미나 결과를 반영한 심사·심판 판단기준, 정책, 제도 개선안 마련('25.上)

2) 협업 과제: 온라인 해외 직구 위조상품 대응

□ 과제 목표

- 해외직구를 통한 위조상품의 국내유입을 국경단계에서 차단
 - 해외직구 물품이 반드시 통과하는 국경단계의 위조상품 적발을 강화하여 위조상품의 국내유입 차단*을 강화할 필요

* 지재권 침해 통관 적발(관세청, 만건): ('21) 2.9 → ('22) 4.5 (해외직구 우편물 비중(87%))
지재권 침해 물품의 유래는 중국이 97%(관세청, '22)

- 특히, 국내 업체에 큰 타격이 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과 국민의 건강·안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상품의 적발·차단 시급

□ 주요 내용

- 해외직구 플랫폼에 게시된 위조상품 모니터링 강화
 -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단의 위조상품 적발 범위*를 해외직구 플랫폼까지 확대하여, 위조상품 판매정보 및 증거 확보
- * K-브랜드 및 건강·안전 위협물품(육아용품, 의료용품, 전기·전자제품 등) 우선실시
- 특허청(모니터링)-관세청(국경단속) 연계로 위조상품 국내 반입 차단
 - 특허청·관세청 업무협력을 통해 위조상품 모니터링 결과가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단계에 활용*되어 국경에서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
- * 통관단계에서 모니터링한 판매정보와 통관정보의 일치여부 확인

□ 부서 간 협업필요 사항

- (산업재산보호정책과) 관련 부처 및 업체 협업 추진
 - 모니터링-통관 연계를 위한 유효정보 취득 및 플랫폼의 협조 유도를 위한 해외직구 플랫폼社(알리,테무)와의 업무 협의('24.1~3)
 - 신속하고 효율적인 모니터링-통관 시스템의 도입 및 관련 규정 마련을 위한 관세청과의 업무 협의('24.2~3) 추진
- (상표특별사법경찰과)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 개편
 - 국내 플랫폼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단(152명)을 해외

플랫폼까지 확대 실시를 위한 세부 계획 및 지침 마련('24.2~3)

□ 추진계획

- 해외직구 플랫폼에 대한 위조상품 모니터링 실시('24.4.~)
- 특허청·관세청 업무협약(MOU) 체결('24.4) 및 국경차단 실시('24.5~)

- 특허청은 성과관리시행계획에 '협업과제' 부분을 신설하고 부서간 협업 및 부처간 협업을 촉진하고자 협업시스템 구축과 협업과제를 선정하였으며, 협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체계적 노력을 갖춘 것으로 분석됨

V. '24년도 특허청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환류 등 관련계획 분석

1. 이행상황 점검계획의 적절성 분석

□ '통합 성과관리'를 통한 주요 정책과제 이행점검의 강화

- 2024년 특허청 업무계획,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통합 성과관리'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정책과제의 이행점검은 과제 성격에 따라 월별·분기별로 구분하여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매월 초 기관장 주재 간부회의를 통해 이행상황을 공유하는 것으로 분석됨
 - * (보고 방식) 간부회의 시 이행실적 자료를 공유하며, 기획조정관이 보고
 - * (관리 기간) 주요 계획이 수립되는 연초부터 12월까지
- 월별 점검대상은 국정과제, 주요 국정 어젠다와 청장 지시사항 임
- 분기별 점검대상은 월별 점검대상에 연두 업무계획, 세입·예산집행, 국감 후속조치, 규제개혁 과제 등을 추가하여 이행점검을 강화하고자 하는 특징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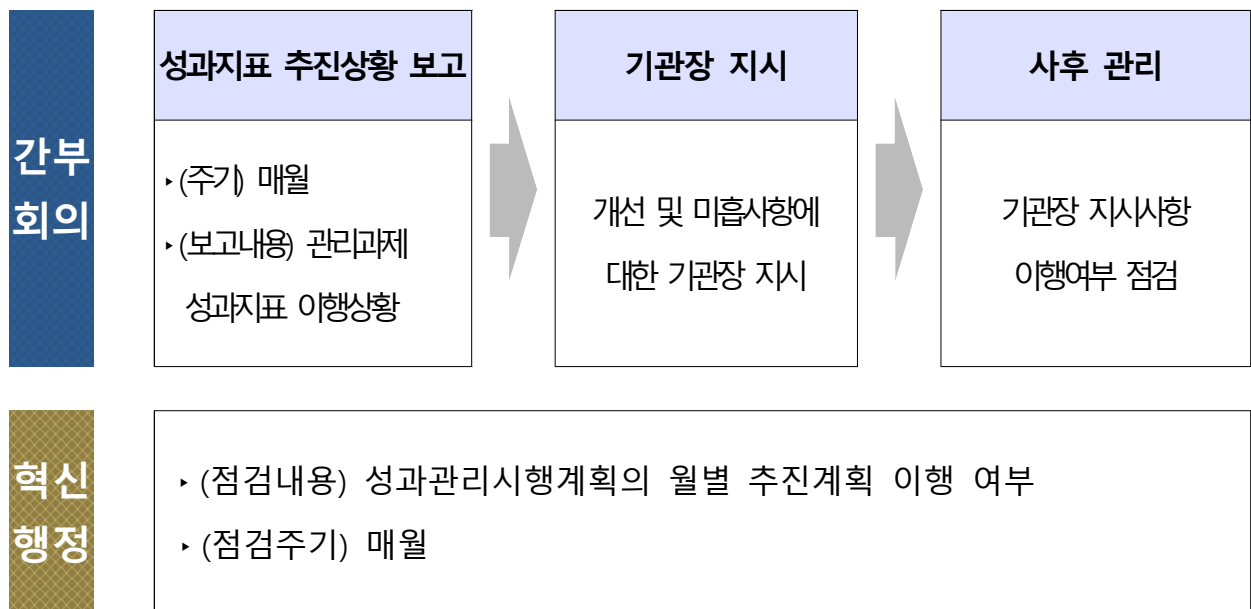
<표 V-1> 특허청 점검 주기별 점검대상 및 담당 부서

주기	점검대상	담당부서	주기	점검대상	담당부서
월별	청장 지시사항, 국정과제	기획재정	분기별	연두 업무계획, 세입·예산집행	기획재정
	주요정책, 정부혁신 일자리 창출	혁신행정		규제개혁 과제	규제법무

□ 주요 과제 추진실적에 대해 조직성과평가를 통한 이행점검 강화

- 부서별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실적에 대해 반기 단위 부서평가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 추진실적 평가를 위해 조직성과평가반(과장급)을 구성하여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과제 담당부서에 피드백하며, 특허청 성과관리위원회(차장 주재)를 반기별로 개최하여 과제별 목표대비 실행 수준 분석, 환경변화에 따른 추진계획 수정·보완하도록 하여 이행점검 강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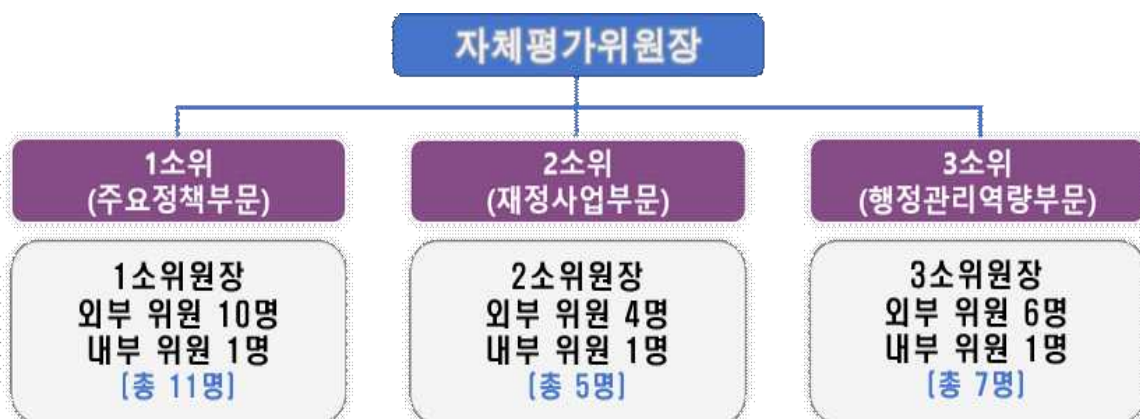
<그림 V-1> 간부회의 및 월별이행상화 점검 과정



□ 자체평가위원회에 의한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의 구체화

-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주요정책, 재정성과 등 전문분야별로 내.외부 민간 전문가 21인으로 구성하였음.
- 전문분야 및 과제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요정책부문(1소위), 재정사업부문(2소위), 행정관리역량부문(3소위)의 소위원회로 구성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 판단됨.
- 자체평가위원회는 전체회의, 분과별 소위원회로 구분하여 평가 수행, 실적 점검 등을 실시함<그림 V-2> 참고.
- 계획의 추진일정 및 주요 논의사항을 구체화한 자체평가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고 판단됨.
- 이는 자체평가 수행의 체계성을 확보하고 자체평가위원회와 청내 수행체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판단됨

<그림 V-2> 특허청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체계도



* 내부 위원은 1소위, 2소위 및 3소위 위원을 겸직

2. 평가결과 환류체계의 적절성 분석

1) 자체평가결과와 성과평가제도의 연계강화

- 특허청은 '24년도 자체평가 결과와 성과평가(조직평가)의 연계를 통해 개인 성과급 및 승진명부 작성에 반영할 계획을 갖추고 있음
 - 자체평가(조직평가) 반영비율 : 국장(50%), 과장급(50%), 4.5급 이하(20%)
- 관리과제의 평가결과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하고, 최종 점수를 성과평가의 조직평가에 40%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됨

<그림 V-3> 특허청 성과평가와 자체평가 연계도



- 특허청은 자체평가결과를 근거로 우수부서 포상, 우수과제 담당자에 대한 인사가점 등 인세티브 제도를 시행할 계획임.

- 주요정책 및 행정관리역량 자체평가결과 우수과제 담당부서에 대하여 기관장 상장, 포상금 등을 지급하고 자체평가결과 우수과제 담당자에 대하여 인사상 혜택으로 개인성과평가 가점 부여하는 적절한 인사제도를 갖추고 있음

<그림 V-4> 자체평가결과의 반영 내용 및 시기

구 분	성과급	인사
내 용	• 자체평가결과를 조직 실적평가에 반영 •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지급에 활용	• 자체평가 결과 우수과제 수행자에 대해 개인성과평가 가점부여 • 승진·전보 • 우수 부서 선정
시 기	2월	수요 발생 시

2)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제도개선 및 사업예산 수립 등에 활용

- (평가) '23년 집행된 재정사업 중 사업수행 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25년 재정운용에 활용할 계획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활용) 평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제도개선 및 사업운영에 반영하고, '25년도 예산편성 시 참고자료로도 활용하고, 예산 성과목표 및 사업방식에 관한 지적은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추진 할 계획인 것으로 판단됨

3) 자체평가결과와 조직·인력 운영계획 수립에 활용

- 특허청은 자체평가의 결과에 따라 조직관리(통·폐합) 및 소요정원 등 인력 운영계획에 반영할 계획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의 중점 과제를 담당하는 상위 평가부서에 대해서는 소요정원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되, 자체평가 결과 중·하위로 평가된 부서에 대해서는 인력운영 측면에서 성과저하의 원인을 파악하고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성과제고를 위하여 지원할 계획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4) 자체평가결과를 정책개선에 활용

- 주요정책 자체평가 결과의 환류 강화로 정책품질을 제고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지적된 개선·보완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반기별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임
- 개선·보완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및 개선성과를 자체평가 시 반영
 - * 자체평가 평가지표에 '개선·보완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반영
- 재정사업평가에서 제시된 미흡사업의 개선 조치 내용을 반기별 점검하여 정책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현장의견 정책반영 계획의 적절성 분석

1)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를 위한 다각적 현장의견 수렴 실시

- 특허청은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단계별 다각적 현장의견을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지식재산 창출 단계** : 창의적 아이디어의 신속, 정확한 권리화를 위한 지식재산제도 구축·운영, 지식재산 혁신기업 육성 및 인력양성을 위한 현장 소통을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분석됨.
 - 심사품질제고를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특허행정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대학·공공연, 대기업 간담회, 지식재산 기업 협의회·기업체 방문 등 기업 의견수렴, 발명·특허특성화고 현장방문 등 교육계 현장 의견수렴 실시
- **지식재산 보호단계** : 지식재산 보호체계의 개선을 위해 전문가, 중소기업, 소비자 의견 수렴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판단됨
 - 지식재산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해외 지재권 분쟁 대응관련 중소기업 간담회, K-브랜드 보호 컨퍼런스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 실시하여 현장의견을 반영할 것으로 판단됨
- **지식재산 활용단계** : 지식재산 금융의 민간 확산, 대학 및 공공연의 지식재산 활용 역량 증진, 그리고 지식재산 사업화 및 거래활성화 등을 위해 현장의견 수렴 및 전문가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판단됨
 - IP금융 시행 투·융자기관 협의, 평가기관 간 품질관리협의회, 산업기술 현

장의 기술니즈 발굴, IP-PLUG(특허공급자, 특허수요자, 특허중개자) 네트워크 운영, 특허경영전문가·특허기술거래 전문관 등 전문가 현장 의견 수렴 실시

2) 현장의견 수렴 관리체계의 강화 및 주기적 모니터링 강화

- 관리체계 : 특허청은 현장의견 수렴 관련사항의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총괄부서(기획재정담당관실, 혁신행정담당관실)을 지정하고 분기별 점검을 실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점검방법 : 모니터링 방법은 국정과제에 반영된 주요 정책의 경우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국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밖의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분기별 점검을 통해 현장 의견에 대한 청취를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인 것으로 판단함.

VI. '24년 특허청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의 성과 제고를 위한 방향

1. 국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핵심 민생과제] 선정 및 집중 추진 필요

- 2024년 정부업무 성과관리는 부서에서 추진 가능한 “핵심 민생과제”를 선정하되, 국민적 관심도가 높을 뿐 아니라 과제의 성과는 국민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핵심 민생과제는 그 성과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인 환류가 요구되며, 국정과제의 연관성 및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과제의 선정이 중요함
- 특히, 핵심 민생과제는 자체평가를 실시할 경우 추진성과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하고 담당부서 및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운영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2. 민생정책의 성과제고를 위한 현장의견 수렴 계획의 구체화 필요

- '24년 특허청의 성과관리 제고를 위해서는 특허청의 주요정책의 이해관계자의 현장의견 수렴, 현장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해결 등 주요정책의 문제와 그 대안의 적실성이 요구되고 있음
- 현장의견 수렴 계획, 분기별 이해 관계자 간담회, 현장 방문 등 민생현장의 의견수렴 등이 계획에 적절히 잘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통한 성과는 반드시 국민체감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함

3. 적절한 '협업과제'의 발굴과 협업에 대한 성과관리 필요

- 협업은 단순히 일을 나누어 한다는 협동의 개념을 넘어 다른 부서, 다른 부처 등이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대안을 고민하고 해결하는 업무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서 및 부처간 협업을 통한 업무효율 및 대국민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음.
- '24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안)에서 강조하듯이 협업과제는 특허청이 자율적으로 과제를 선정하되, 협업을 통한 자원의 절감, 갈등의 해소, 행정 서비스의 개선 등 실질적으로 성과의 창출이 가능하고 그 성과가 측정가능한 것으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함
- 이는 부서내에서 당연히 협조해야할 업무 들이 협업과제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협업을 통해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 협업을 통해 서비스가 개선될 영역(민원인의 대기시간 절감, 비용절감, 서비스의 만족도 제고 등), 협업을 통해 비용절감 등 성과가 높아지는 영역 등을 고려하여 협업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요구됨
- 특허청의 경우, 협업을 성과관리에 도입하는 첫해 임을 고려하여 특허청의 주요 임무과 관련된 영역을 중심으로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체계적인 이해와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음
- 특허청의 자체평가계획에서도 제시하고 있지만 협업 우수사례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함. 특히 협업의 평가시 협업의 난이도와 협업의 성과를 구분하여 평가지표를 구성하고 평가하는 것이 요구

됨

4. 성과관리의 자율성 강화와 미흡 및 부진 과제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특허청은 성과관리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워크숍, 간단회 등을 개최하고 성과관리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 즉 서식의 간소화, 지표의 개발, 사례의 공유 등 주기적인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음
- 특허청은 경쟁의 선순환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속적인 개선 이행을 위해 미흡 및 부진과제를 대상으로 집중관리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부처는 연초 미흡 및 부진과제에 대한 반기별 실행계획을 포함하여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자체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 반기별 점검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미흡 및 부진관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사회적 관심도가 높거나 현장점검이 필요한 과제는 수시현안분석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함.

5. 상시 점검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한 자체평가의 적절성 확보

- 특허청은 자체평가의 적절성 확보를 위해 상시 점검 모니터링 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자체점검 및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미흡원인 분석 및 정책 대안·개선조치 사항 제시 등 평가결과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향후 특허청은 상반기 자체점검 및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원인분석, 대안 마련, 개선조치 등 평가결과에 대한 구체적 분석 등을 통해 자체평가의 적실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국무조정실, 2023. 2023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

국무조정실, 2024. 2 2024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안).

국무조정실, 2022.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022-2024)

정부업무평가위원회 · 국무조정실, 2023, 2022년도 주요정책 부문평가 : 과제별
보고서.

정부업무평가위원회 · 국무조정실, 2024.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 국무조정실, 2023.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시행 2016.3.29.] [법률 제14118호, 2016.3.29., 일부개정]

특허청, 2024, 2024년도 특허청 성과관리 시행계획(안). 내부분서.

특허청, 2024. 2024년도 특허청 자체평가 계획. 내부분서.

특허청, 2024, 2024년도 특허청 성과관리 시행계획(안) 및 특허청 자체평가 계획
(안) 자체평가위원 검토의견. 내부분서.